

- ⑤ 100점 만점 기준의 성적을 등급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별표 8의 100점 기준 점수 환산기준표에 따른다.

**제39조(과정별 최저이수학점 및 수료 자격)** ① 각 대학원의 수료에 필요한 최저이수 학점은 별표 9와 같다.

- ② 학업성적의 평점이 2.0(C0) 이상인 경우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되, 수료를 위한 총 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은 3.0(B<sup>0</sup>) 이상이어야 한다.
- ③ 각 과정의 수료는 매 학기말로 한다.

## 제6장 학위수여

**제40조(학위청구자격과 학위논문)** ① 학위를 청구하려는 재학생 또는 대학원연구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과정에서 정한 수료를 위한 최저이수학점 이상 취득
  2. 연구윤리서약서와 각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연구윤리교육 이수증 제출
  3. 종합시험 합격
  4. 외국어시험 합격. 다만, 특수대학원은 외국어시험 부과 여부를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음
  5. 기타 소속 대학원과 학과가 시행세칙으로 정한 요건
- ②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 중 전문학위와 미술학석사 학위, 학위논문에 상응하는 대체실적에 의한 학위수여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시행세칙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 ③ 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의 응시자격 등 학위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1조(학위논문심사위원회 및 심사료)** ① 제출된 해당 학위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선정된 심사위원(석사학위의 경우에는 3명 이

상,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학위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심사위원의 자격과 학위논문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③ 학위논문을 제출하는 사람은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학위취득연한)** 수료 후 학위취득연한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학위취득연한을 경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주임교수의 추천 및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석사과정은 2년 이내에, 박사과정은 3년 이내에 학위취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43조(지도교수 및 논문지도위원회)** ① 학생은 해당 대학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수업 및 연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②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이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논문지도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③ 학위논문제출을 요구하는 학위과정 학생의 논문 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지도교수의 자격과 논문지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4조(학위수여)** ①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대학원에서도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② 각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류는 별표 11과 같다.
- ③ 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거나 수료한 학생으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과정포기원을 제출하고 소속 대학원이 정한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경우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④ 총장은 각 대학원이 정한 학위수여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학위기를 수여한다.

중 주간수업, 계절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

**제18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학기당 최저 3학점 이상 하여야 하며, 최고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학위취득을 위한 최소학점은 기초선택 과목 18학점, 전공선택 과목 15학점(전공영역 전공선택 9학점, 전공/기타 영역 전공선택 3학점, 전공영역 프로젝트과제연구 3학점)으로 구성된다.

③ 평점 2.5(C+) 이하인 교과목에 대하여 재수강할 수 있으며, 해당 교과목이 교과과정 개편으로 인하여 폐지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가 인정하는 과목으로 대체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제19조(공개강좌)** ①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실무자 및 경영자를 위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수자에게는 이수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수강생으로부터는 실비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③ 공개강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원위원회가 정한다.

**제20조(전공영역신청 및 변경)** ① 전공영역신청은 1학년 2학기 중에 하여야 한다.

② 전공의 변경은 부원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허용할 수 있다.

**제21조(본교 및 국내외 타 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본교 및 국내외의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평점 3.0(B<sup>0</sup>) 이상이고 대학원의 개설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수업연한이 단축되지는 아니한다.

## 제5장 학위수여

**제22조(종합시험)** ①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 과정에서 2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3.0(B<sup>0</sup>) 이상인 사람
2. 수료생인 경우 대학원연구생으로 등록을 필한 사람
- ② 종합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 ③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응시원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종합시험 과목은 교과과정에 개설된 과목 중 주임교수가 정한다.
- ⑤ 종합시험은 필기시험 방법으로 한다.
- ⑥ 종합시험의 출제 및 채점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구성 및 자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과목당 위원은 2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인으로 구성하는 때에는 출제문제를 2배수로 한다.
  2. 위원은 해당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 교원 중에서 주임교수가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전공분야의 특수성 등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 ⑦ 출제범위와 수준은 전공영역에 관한 포괄적 지식과 연구방법의 이해력 및 응용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로 한다.
- ⑧ 합격인정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 과목별 합격도 인정한다.
- ⑨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과목을 응시 횟수에 관계없이 재응시할 수 있다.
- ⑩ 전공영역별 프로젝트과제연구 과목을 평점 3.0 (B<sup>0</sup>)이상으로 취득한자에 대하여는 해당 전공의 종합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 ⑪ 프로젝트과제연구 과목은 4학기부터 수강할 수 있으며 3학점까지만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제23조(외국어시험)** ①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 과정에서 2개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사람
  2. 수료생인 경우 대학원연구생으로 등록을 필한 사람
- ② 외국어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 ③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응시원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외국어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외국인 학생의 경우 본국에서 사용하는 공용어와 상용어를 제외한 외국어시험 또는 한국어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1.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에서 응시자가 택일

2. 다음의 외부공인시험으로 대체

- 토플(TOEFL), 토익(TOEIC), 텡스(TEPS), 일본어능력시험(JPT, JLPT), 한어수평고시(HSK), 아이엘츠(IELTS), 토익스피킹(TOEIC SPEAKING), 오픽(OPIC), 지텔프(G-TELP), 한국어능력시험(TOPIK)

⑤ 외국어시험의 출제 및 채점위원은 각 과목당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해당 외국어에 능통한 교내·외 교원 중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⑥ 외국어시험 합격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 주관 외국어시험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외부공인시험 : 별표 1에서 정한 일정점수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후 매년 3월과 9월의 정해진 신청기간에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람

⑦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응시 횟수에 관계없이 재응시할 수 있다.

**제24조(비용징수)**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의 출제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중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응시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학위수여요건)** ① 학칙 제40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22.12.1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전 석사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학칙 제40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을 갖추고,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 제5장제2절에 따라 학위논문을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2.>

**제26조(학위수여 사정과 보고)** ① 대학원장은 학위수여자의 자격을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정한다.

- ② 대학원위원회는 자격 확인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조건부로 학위수여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 조건의 미이행이 확정된 경우 학위는 취소된다.
- ③ 대학원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써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27조(학위수여 시기)** 학위수여는 매년 2월과 8월에 한다.

## 제6장 계약학과

**제28조(설치·운영)** ① 학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 석사과정(이하 “계약학과”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 ②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계약학과별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③ 계약학과의 명칭과 입학정원 및 그 밖에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계약학과 운영규정」에 따른다.